

정 관

주식회사 마집

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상호)

이 회사는 주식회사 마집(이하, "회사"라 한다.)이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

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업태 : 제조업, 도매 및 소매업, 출판업
2. 종목 : 의류 및 패션용품의 제조, 도·소매, 수출입업
베개, 방석, 매트 등 생활용품의 제조, 도·소매, 수출입업
자석 및 자기 부상체의 제조, 도·소매, 수출입업
ODM·OEM 생산 및 기술이전 관련 사업
온라인·오프라인 마케팅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
서적·전자출판물 기획 및 제작,
서적·전자책 도·소매, 수출입업
위 각 호에 부대하는 제반 사업 일체

제 3 조 (본점과 지점의 소재지)

이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 (또는 이사회)의 결의로서 각지에 지점, 출장소 또는 영업소를 둘 수 있다.

제 4 조 (공고 방법)

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 다만, 전산장애 시에는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일간 경인일보에 게재한다.

제 2 장 주식과 주권

제 5 조 (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)

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만 주(10,000주)로 한다.

제 6 조 (일주의 금액)

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오천 원(5,000원)으로 한다.

제 7 조 (회사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)

이 회사는 설립 시에 이천 주(2,000주)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.

제 8 조 (주식의 종류)

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전부 기명식 보통 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, 십주권, 백주권의 3종으로 한다.

제 9 조 (주권 불소지)

당 회사는 주권 불소지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.

제 10 조 (주금 납인의 지체)

주금 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부기일 다음 날로부터 납부가 끝날 때까지 지체 주금 백 원에 대하여 일변 십 전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에 따라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명의변경)

1. 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변경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에서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2.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면 이 회사의 청구에 따라 제1항의 청구서 이외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)

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도 같다.

제 13 조 (주권의 재발행)

1. 주권의 분할, 병합,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2.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채권 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(수수료)

제 11조에서 제13조에서 정하는 청구를 하는 자는 이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제 15 조 (주주명부의 폐쇄)

1.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.

2.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고 또는 기준일을 정할 수가 있다.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이 주간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.

제 16 조 (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)

당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당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그의 성명, 주소와 인감을 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 3 장 주주총회

제 17 조 (소집)

정기주주총회는 영업연도 말일의 다음 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 기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시 이를 소집한다.

제 18조 (소집통지및공고)

1.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시기, 장소 및 회의 목적 사항을 총회일 10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
2.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,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,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. 결의의 목적 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 19 조 (의장)

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.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주주총회(또는 이사회)에서 선임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20 조 (정족수와 결의 방법)

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.

제 21 조 (의결권의 대리 행사)

주주는 대리인에게 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 22 조 (회의록)

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 요령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비치한다.

제 4 장 임원과 이사회

제 23 조 (이사와 감사의 원수)

이 회사의 이사는 1명 이상으로 하고,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. 단, 상법 제409조4항에 의한 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 24 조 (이사의 선임)

이 회사의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(단, 사내이사, 사외이사, 기타 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선임한다.)

제 25 조 (감사의 선임)

이 회사의 감사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결의 방법에 따라 선임한다. 그러나 이 경우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백 분의 삼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26 조 (이사의 임기)

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.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에 끝날 때는 그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한다.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 임기와 같이한다.

제 27 조 (감사의 임기)

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.

제 28 조 (보선)

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정관 제22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29 조 (보수와 퇴직금)

1.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.
2.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별도로 정하는 (임원)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. 단, 임원의 퇴직금은 최대 3배수 이내로 한다.

제 30 조 (대표이사)

1. 이 회사는 사장(이하 "대표이사"라 한다.) 1인 이상과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동 대표이사 규정을 둘 수 있고, 부사장, 전무이사와 상무이사 각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 (단, 이사가 3인 미만일 경우 주주총회결의로 정할 수 있다)
2.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이사회(또는 주주총회)의 결의에 따라 선임한다.
3. 사장은 당 회사를 대표한다.

제 31 조 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및 결의)

1.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회사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며, 의장은 사장 또는 매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로 한다.
2.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한다.
3.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부사장, 전무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4.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
5.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3일 전에 각 이사 또는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어나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.

제 32 조 (의사록)

1.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2. 회의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 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33 조 (감사의 직무)

1.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2. 감사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 34 조 (고문)

이 회사는 필요시 이사회 결의로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.

제 5 장 계 산

제 35 조 (사업년도)

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기 말에 결산한다.

제 36 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, 비치 등)

1.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,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

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(1) 대차대조표
- (2) 손익계산서
- (3)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

2.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 및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.

4.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바로 대차대조표와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37 조 (이익금의 처분)

회사는 매기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
1. 이익준비금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십분의 일 이상
2. 별도 적립금 약간
3. 주주 배당금 약간
4. 임원 상여금 약간
5. 후기 이월금 약간

제 38 조 (이익배당)

매기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
1.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.
2. 이익배당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하며 이익배당금에 대한 이자는 붙이지 아니한다.

부 칙

1. (최초의 영업연도) 이 회사의 최초 영업연도는 회사성립일로부터 동년 12월 말일 까기로 한다.
2. (발기인) 발기인의 성명, 주소와 설립 시에 인수한 주식 수는 이 정관 끝에 기재함과 같다.
3.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5년 10월 22일 개정하여 시행한다.

위 정관은 원본과 틀림없음

주식회사 마집

대표이사 김중학

주 주 명 부

| 번호 (보유지분순) | 주주명 | 생년월일 | 주소 | 보유 주식수 | 금액 (환산) |
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|-----------|-------------|
| 1 | 김중학 | 19580519 | 경기도 광주시 이배재로 248-1, 제이비타운2차 103동 201호 | 2,000 | 10,000,000원 |
| 2 | | | | | |
| 3 | | | | | |
| 4 | | | | | |
| 5 | | | | | |
| 6 | | | | | |
| 합 계 | | | | 2,000 | 10,000,000원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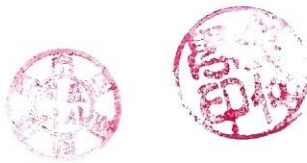
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동일 함을 증명합니다.

2025년 10월 22일

업 체 명 : 주식회사 마집

주 소 : 경기도 광주시 이배재로 248-1, 제이비타운2차 103동 201호

대표이사 : 김 중 학 (인)



주식회사 마집

주주총회 서면 결의

1. 일시 : 2025년 10월 22일 09시
 2. 장소 : 경기도 광주시 이배재로 248-1, 제이비타운2차 103동 201호
 3. 의장 : 대표이사 겸 주주 김 중 학
- 출석 주주 : 발행주식 총수 100% (1인 주주 김중학)
의장은 본인의 전원 출석으로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개의를 선언하였다.

의안 제1호 : 사업 목적 변경의 건

- 종전 목적 :

1. 업태 : 제조업, 도매 및 소매업, 출판업
2. 종목 : 바지 등 하의 제조업,
바지 등 하의 도·소매업,
바지 등 하의 자재 수출입 및 판매업,
서적·전자출판물 기획 및 제작,
서적·전자책 도·소매업,
기타 부대사업 일체

- 변경 목적 :

1. 업태 : 제조업, 도매 및 소매업, 출판업
2. 종목 : 의류 및 패션용품의 제조, 도·소매, 수출입업
베개, 방석, 매트 등 생활용품의 제조, 도·소매, 수출입업
자석 및 자기 부상체의 제조, 도·소매, 수출입업
ODM·OEM 생산 및 기술이전 관련 사업
온라인·오프라인 마케팅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
서적·전자출판물 기획 및 제작,
서적·전자책 도·소매, 수출입업
위 각 호에 부대하는 제반 사업 일체

→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다.

2025년 10월 22일
주주 겸 의장 김중학 (인)



무상임대확인서



1. 부동산의 표시

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소재지 | 경기도 광주시 이배재로 248-1, 제이비타운2차 103동 201호 |
| 구조 | 연립 |
| 용도 | |
| 면적 | 60.615m ² |

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 박선유는 임차인 주식회사 마집에게 2025.09.01.부터 2027.09.01.까지 무상으로 임대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계약일 : 2025.09.01.

2. 계약당사자

| | | | | |
|-----|------|---|------|---------------|
| 임대인 | 성명 | 박선유 (인)  | | |
| | 주민번호 | 661016-2004913 | 전화번호 | 010-5216-3807 |
| | 주소 | 경기도 광주시 이배재로 248-1, 제이비타운2차 103동 201호 | | |
| 임차인 | 성명 | 주식회사 마집 대표이사 김중학 (인)  | | |
| | 주민번호 | 131111-0590933 (580519-1345428) | 전화번호 | 010-5324-3467 |
| | 주소 | 경기도 광주시 이배재로 248-1, 제이비타운2차 103동 201호 | | |